

# 서울특별시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753
----------	------

2020년 9월 15일  
보건복지위원회

##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8월 12일 서울특별시장
2. 회부일자 : 2020년 8월 21일
3. 상정일자 :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2020년 9월 3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 II. 제안설명의 요지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 1. 제안이유

- 학대피해 아동에게 신체적 안전을 보장하고, 초기상담에서 전문적인 심리치료까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서울특별시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추가 설치·운영할 예정이며,
- 전문 법인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양질의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

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시설개요

○ 시설명: 학대피해아동쉼터

○ 소재지 : 서울 강서구 화곡로

※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입소아동의 안전을 위해 주소를 비공개로 하고자 함

○ 시설규모 : 108.81m<sup>2</sup>(SH임대)

○ 공간구성 : 침실, 거실, 주방, 화장실

### 나. 주요위탁 내용

○ 위탁기간 : 5년 (2021. 1. 1.~2025.12.31.)

○ 위탁업무

-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 피해아동 생활지원 : 의복 등 생필품 지원, 일상생활 훈련 및 생활 지원
- 상담 및 치료 : 심리검사, 개별심리치료, 집단심리치료, 건강 검진, 지원 및 병원치료

- 교육 및 정서지원 : 학업지도, 안전교육, 문화체험, 체육활동

○ 소요예산 : 276,735천원('21년)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신규 위탁)

#### 다.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현황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 제22조제1항제4호

-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

-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제11조(학대피해 아동쉼터 설치·운영 등)

#### 라.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은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및 정서·사회·심리적 기능회복을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그 특성상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다년간의 현장 경험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사무로,

○ 직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양육, 상담치료, 교육 및 정서지원 등 전문성 및 인력 부족으로 원활한 사업추진 어려움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위탁운영)

**제34조제5항(위탁운영)**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 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제11조(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운영 등)

**제11조(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피해아동의 신체적 안전 및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2. 피해아동 생활지원
3. 상담 및 치료

4. 교육 및 정서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필요시 제1항에 따른 확대피해아동쉼터의 운영을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제9호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3.18, 2009.7.30, 2014.5.14>

9.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나. 예산조치 : '21년 예산 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Ⅲ.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문성)

#### 1 동의안 제출 경위 및 민간위탁 추진 개요

-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조례」”라 함)」제4조의3<sup>1)</sup>에 따라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 2019년 3월 개정된 「민간위탁조례」에 따라 신규 민간위탁 사무의 경우, 예산편성 전에 사전적으로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음.
- 시장이 민간위탁하려는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의 관리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무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 피해아동 생활지원 : 의복 등 생필품 지원, 일상생활 훈련 및 생활 지원

- 
- 1)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3. 28.>
-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사무 및 운영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3. 28.>
- ④ 시장은 제15조제6항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다시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시장은 의회의 동의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재계약·재위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9. 3. 28.>

- 상담 및 치료 : 심리검사, 개별심리치료, 집단심리치료, 건강검진, 지원 및 병원치료
  - 교육 및 정서지원 : 학업지도, 안전교육, 문화체험, 체육활동
- 학대피해아동 쉼터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sup>2)</sup>로서, 학대판정을 받은 아동을 일시보호 조치함. 동 쉼터의 설치·운영비는 국비와 지방비 매칭(4 : 6)으로 지원되고 있음.
- 학대피해아동쉼터는 학대피해아동이 지속적인 학대로 인해 문제행동(거짓말, 도벽, 분노 등) 및 우울증·자해·자살 충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 일반아동과 함께 생활하는 것보다는, 피해아동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용시설이 필요하고, 아동학대 후유증에 대하여 신속하게 개입함으로써 피해아동의 건강한 자아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임.
- 최근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어 아동학대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나, 서울지역 아동학대피해쉼터는 총 4개소로 전국 운영 중인 쉼터 수의 5%에 불과한 실정임.

### <학대피해아동쉼터 전국 배치 현황>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76	4	4	2	2	2	4	2	1	13	5	7	6	3	9	6	3	1

2)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으로 구분되며, 「아동복지법」 제53조의2(학대피해아동쉼터의 지정)에 따라 지정·운영되고 있음.

### <서울시 학대피해아동쉼터 현황>

연번	기관명	관리주체	설치장소	운영단체	종사자	설치일	비고
1	이룸쉼터	서울시 (민간위탁)	중랑구	(사)아동그 룹홈협의회	5명	2018.2.28.	여아
2	다운쉼터	서울시 (민간위탁)	관악구		5명	2017.12.14.	남아
3	꿈자람쉼터	서울시 (민간위탁)	동대문구	(사)모래 놀이상담 협회	5명	2018.4.14.	여아
4	OU쉼터	노원구 (민간위탁)	노원구		5명	2019.7.10.	여아

- 또한 서울시가 실시한 아동복지정책 관련 연구용역<sup>3)</sup> 결과에서도 증가하는 학대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까지 최소 4개 이상의 아동학대피해쉼터의 증설을 제안하고 있음.

### <학대피해아동 쉼터 단계적 증설 방안>

2020년	2021년	2025년
1개소 추가 설치 (서북권)	1개소 추가 설치 (도심권)	2개소 추가 설치 (서남권, 동남권)

3) 서울특별시(2020), 「서울시 아동복지정책 기본계획 마련을 위한 학술용역」, 서울연구원, pp. 283.



## 2 민간위탁 대상사무 여부에 대한 타당성 검토

- 민간위탁의 대상으로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행정권의 포기과 공익성 실현의 왜곡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법치국가의 원리상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범위와 한계를 분명히 할 것이 요청됨.
- 그런데, 본 동의안에서 위탁하려는 학대아동피해쉼터 운영에 관한 사무는 피해아동에게 신체적 안전 및 신속한 후유증 개입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대체로 비권력적이고 전문기술적인 사무가 민간위탁의 대상이 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특별한 문제는 초래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또한, 이는 현행의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sup>4)</sup>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로서의 그 기준이 적합한지와 같은 조례 제6조<sup>5)</sup>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내용으로 적합여부를 판단해

- 
- 4)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5)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3. 문화·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공원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5. 시립병원, 보건·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볼 때도, 동 컴퓨터 운영에 관한 사무는 민간위탁 사무로서의 그 법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됨.

### 3 민간위탁 대상사무 여부에 대한 정책적 검토

-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실익은 효율성 제고와 공급비용 절감 등 다양할 수 있으나, 사회복지서비스와 같은 휴먼서비스의 경우 그 특성상 서비스의 질과 전문성 제고를 민간위탁의 일차적 목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사회복지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임.
- 이에 금번 학대피해아동 컴퓨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판단은 민간위탁을 통한 서비스 품질의 향상, 전문성의 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를 통한 이용자의 복지향상과 같은 질적 측면에서 효과가 뚜렷한지 여부가 핵심 요소라 할 것임.
- 학대피해아동 컴퓨터 운영 사무는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및 정서·사회·심리적 기능회복을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그 특성상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다년간의 현장 경험에 기반 한 서비스 제공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이의 노하우를 지

---

6.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7.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8. 영어마을 운영에 관한 사무

9.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닌 민간단체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 운영하게 한다면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동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을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려는 본 동의안은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 4 종합 검토 의견

- 금번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에 관한 사무는 민간위탁 사무로서의 그 법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됨.
- 또한 학대피해아동에게 아동의 특성(인구사회학적)을 고려하고 심리·정서 지원 서비스와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그 사무의 특성상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다년간의 현장 경험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이의 노하우를 지닌 민간단체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 운영하게 한다면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임.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1753
----------	------

제출년월일 : 2020년 8월 12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1. 제안이유

- 가. 학대피해 아동에게 신체적 안전을 보장하고, 초기상담에서 전문적인 심리치료까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서울특별시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추가 설치·운영할 예정이며,
- 나. 전문 법인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양질의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시설개요

- 시설명 : 학대피해아동쉼터
- 소재지 : 서울 강서구 화곡로
  - ※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입소아동의 안전을 위해 주소를 비공개로 하고자 함
- 시설규모 : 108.81㎡(SH임대)
- 공간구성 : 침실, 거실, 주방, 화장실 등

## 나. 주요위탁 내용

- 위탁기간 : 5년 (2021. 1. 1.~2025.12.31.)
- 위탁업무
  -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 피해아동 생활지원 : 의복 등 생필품 지원, 일상생활 훈련 및 생활 지원
  - 상담및치료: 심리검사, 개별심리치료, 집단심리치료, 건강검진 지원및병원치료
  - 교육 및 정서지원 : 학업지도, 안전교육, 문화체험, 체육활동
- 소요예산 : 276,735천원('21년)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신규 위탁)

## 다.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현황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 제22조 제1항 4.
  -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
  -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제11조(학대피해 아동쉼터 설치·운영 등)

## 라.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은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및 정서·사회·심리적 기능회복을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그 특성상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다년간의 현장 경험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사무로,

- 직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양육, 상담치료, 교육 및 정서지원 등 전문성 및 인력 부족으로 원활한 사업추진 어려움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위탁운영)
  -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 ①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제11조(학대 피해아동쉼터 설치·운영 등)
  - ① 시장은 피해아동의 신체적 안전 및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2. 피해아동 생활지원
3. 상담 및 치료
4. 교육 및 정서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필요시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운영을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9.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나. 예산조치 : '21년 예산 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가족담당관 아동친화도시팀 김은경 (☎ 2133-5183)